수험표

시험명	제52회 SQL 개발자				
수험번호	052010403	시험구분	필기		A Section of the Sect
종목명	SQL 개발자(SQLD)				
성 명	김경연	생년월일	1997.10.15	के Kd	DESIGNAL MARKET
시험일시	2024.03.09(토) 입실 08:30~09:30, 시험 10:00~11:30 · 08:30부터 입실 가능 및 09:30까지 입실 완료 · 09:30부터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, 본인 확인 등 실시				
시험장소	제52회 SQLD (서울) 양재고등학교 · 주소 :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46길 9 양재고등학교				
준비물	· 신분증 (신분증 인정범위 참조, 미지참시 응시 불가) · 필기구 (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검정색 볼펜) · 수험표				

수험자 유의사항

유의사항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 응시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- 1. 수험자는 수험표에 표시된 시험일시 및 장소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, **시험이 시작된 10:00 이후에는 고사실에 입실할 수 없음**
- 2. 수험원서(접수신청서) 및 답안지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작성
 - ·**필기시험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볼펜만 사용하며,** 그 외 연필류, 유색 필기구 등을 사용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될 수 있음
 - ·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시 수정테이프나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음
 - ·필기시험 단답형 또는 서술형 답안 정정은 정정하고자 하는 단어에 두줄(=)을 긋고 다시 작성
 - ·필기시험은 **종료 5분 전까지 답안지 교체가 가능**
 - · 답안지 기재 착오, 누락, 불완전한 답안 수정처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
- 3. 접수된 수험원서, 그 밖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응시료는 사유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환불
- 4. 수험자는 반드시 아래의 인정 범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, **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. 모바일을 포함한 모든 본인 확인은 시험 시작 전까지 완료되어야 함**

[신분증 인정범위:모든 수험자 적용]

- 1)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및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)
- 2) 운전면허증(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 및 운전면허 모바일 확인서비스
- 3)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
- 기 연고
- 5) 공무원증(장교·부사관·군무원 신분증 포함)
- 6)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(주민등록 번호가 표기된 것)
- 7) 국가유공자증
- 8) 국가기술자격증
- 9)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(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

[대체신분증: 규정 신분증 발급에 불가세약이 있는 수험자에 한정 적용]

o 초·중·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

- 1)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증(사진·생년월일·성명·학교장 직인이 표기·날인된 것)
- 2) 재학증명서(NEIS에서 발행(사진 포함)하고 발급기관 확인·직인이 날인된 것)
- 3) 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(시행기관 별지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 · 직인이 날인된 것)
- 4) 청소년증(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

o 사병(군인)

1) 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(시행기관 별지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 확인 · 직인이 날인된 것)

o외국인

- 1) 외국인등록증
- 2)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
- 3) 영주증

[신분증 인정 기준]

- 1) 일체 훼손 · 변형 * 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 · 인정
- * 사진 또는 외지(코팅지)와 내지가 탈착 · 분리 등 변형이 있는 것, 훼손으로 사진 · 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
- 2) 사진, 주민등록번호(최소 생년월일), 성명, 발급자(직인 등)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・인정
- 3) 유효기간이 있는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유효 · 인정
- 4) 신분증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 하지 않음 (대학교학생증, 사원증, 국가기술자격증 이외의 자격증, 신용카드 등은 인정불가)

[모바일 신분증 인정 범위]

- 1)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
- 2) 카카오, 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
- 3)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
- 4)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
- ※ 모바일 신분증 원본 외 화면 캡쳐본, 촬영본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
- 5. 필기시험 수험자는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(컴퓨터용 사인펜 또는 볼펜)를 지참해야 함
- 6.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,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에는 감독관의 제지여부와 관계없이 소음 이 발생하거나 소지만으로 해당 시험이 중지 및 무효 처리됨

[반입금지 전자통신 기기 사례]

- ①휴대폰,②스마트워치·스마트센서 등웨어러블 기기,③태블릿 PC,④전자계산기
- ⑤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(시각표시 기능만 있는 시계는 사용 가능) ⑥ MP3플레이어,
- ⑦디지털카메라, ⑧카메라펜, ⑨ 전자사전, ⑩라디오, ⑪ 미디어플레이어 등
- 7. 시험시간 중에는 필기구 등 일체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줄 수 없음
- 8.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
- 9. 시험 관련 아래의 부정행위를 한때에는 당해 시험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되며, 앞으로 2년(시행기관 주관 민간자격) 또는 3년간(국가 기술자격)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

[부정행위 기준]

- ·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
- ·문제지 또는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
- ·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,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
- ·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
- ·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
- ·고사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
- ·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
- ·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
- ·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
- ·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*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 또는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
 - * (통신기기 및 전자기기) 휴대용 전화기,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(PDA),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(PMP), 휴대용 컴퓨터, 휴대용 카세트, 디지털카메라, 음성파일 변환기(MP3), 휴대용 게임기, 전자사전, 카메라펜,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이와 유사한 기기
- ·문제지 또는 답안지 등을 절취하거나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행위
- ·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
- 10. 시험 관련 아래의 행위를 한때에는 퇴실 조치되어 당해 시험이 중지 또는 무효 처리됨

[시험 중지 및 무효(퇴실조치) 기준]

- ·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·통신기기로 인한 소음이 발생한 경우
- ·문제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잘라 소지한 채 퇴실하거나, 시험문제 및 작성답안을 옮겨 적어 밖으로 가져나가는 경우
- ·시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의시험을 방해하는 경우
- ·시험장의 각종 시설, 장비 등을 파괴, 손괴, 오손하는 경우
- ·응시안내 등을 통해 공지한 시험 중지 및 무효,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
- · 기타 시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퇴장 또는 응시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
- 11.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
- 12.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는 동일한 종목의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음
- 13. 음료를 포함한 개인 소지품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답안지 또는 시설물 등의 파손은 수험자의 귀책으로 시험의 0점 처리 및 변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
- 14. 시험정보(문제, 답안, 채점기준, 수험자의 답안지 등)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며, 시험문제 전부 또는 일부를 잘라 소지한채 퇴실하거나, 시험문제 및 작성답안을 수험표 등에 옮겨적어 밖으로 가져갈 수 없음